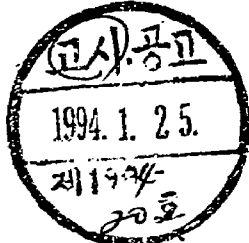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우-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731-6391-4/ 전송 731-6795

문서번호 주계 58533-197  
 시행일자 1994. 1. 25  
 (경유)

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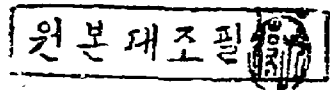
|        |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취급     |     |    |  | 시 장              |
| 보존     |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|
| 주택국장   |     | 전결 |  |                  |
| 주택개량과장 |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|
| 개량2계장  |     |    |  | 법무담당관<br>(고시안심사) |
| 기안     | 정순구 |    |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|    |  | 협조               |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92-599호(92.11.12) 및 같은고시 제93-56호(93.3.5)로 지구지정된  
 우터시 상암1. 구파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불  
 합리한 지구경계의 조정과 지구계 변경이 없는 단순면적정정을 위하여 관할구청장으로  
 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

2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(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)제1항  
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(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)제4항 및 제12조(권한의 위임)  
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고시(안)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 
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(안) 1부  
 2. 지구변경지정도면 1부  
 (제 2 안)

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제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상암1. 구파발1지구)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치법 제3조 . 같은법시행령

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

첨부 1. 고시문 사본2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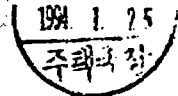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92-599호(92.11.12) 및 같은고시 제93- 56호(93.3.5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상암1 및 구파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지정 및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변경지정도면 각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

(제 4 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

1. 마포구주택58533 - 3169호(93.10.16) 및 은평구주택58531 - 47호(94.1.7)와 관련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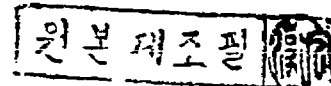
2. 위호와 관련 귀구 상암1 및 구파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와 동법시행령제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관련부서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개선계획수립등 사업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바람.

첨부 1. 고시문 사본1부.

2. 지구변경지정도면 각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수신처 : 마포구청장, 은평구청장.

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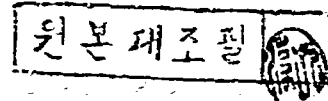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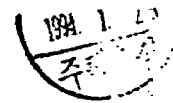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92-599호(92.11.12) 및 같은고시 제93-56호(93.3.5)로 지구지정된  
우리시 상암1. 구파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을위한임시조치  
법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규정에 의거 변경지정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  
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변경지정도면 1부. 끝.

## 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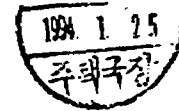
|     |             |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집사  | 1994. 1. 16 | 호     |
| 담당자 | 김재성         | 법무담당관 |
|     | 서           | 홍     |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20 호

###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92-599호(92.11.12) 및 같은고시 제93-56호(93-56호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상암1. 구파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(마포구. 은평구) 도시정비국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1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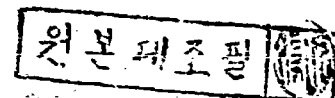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장

#### 가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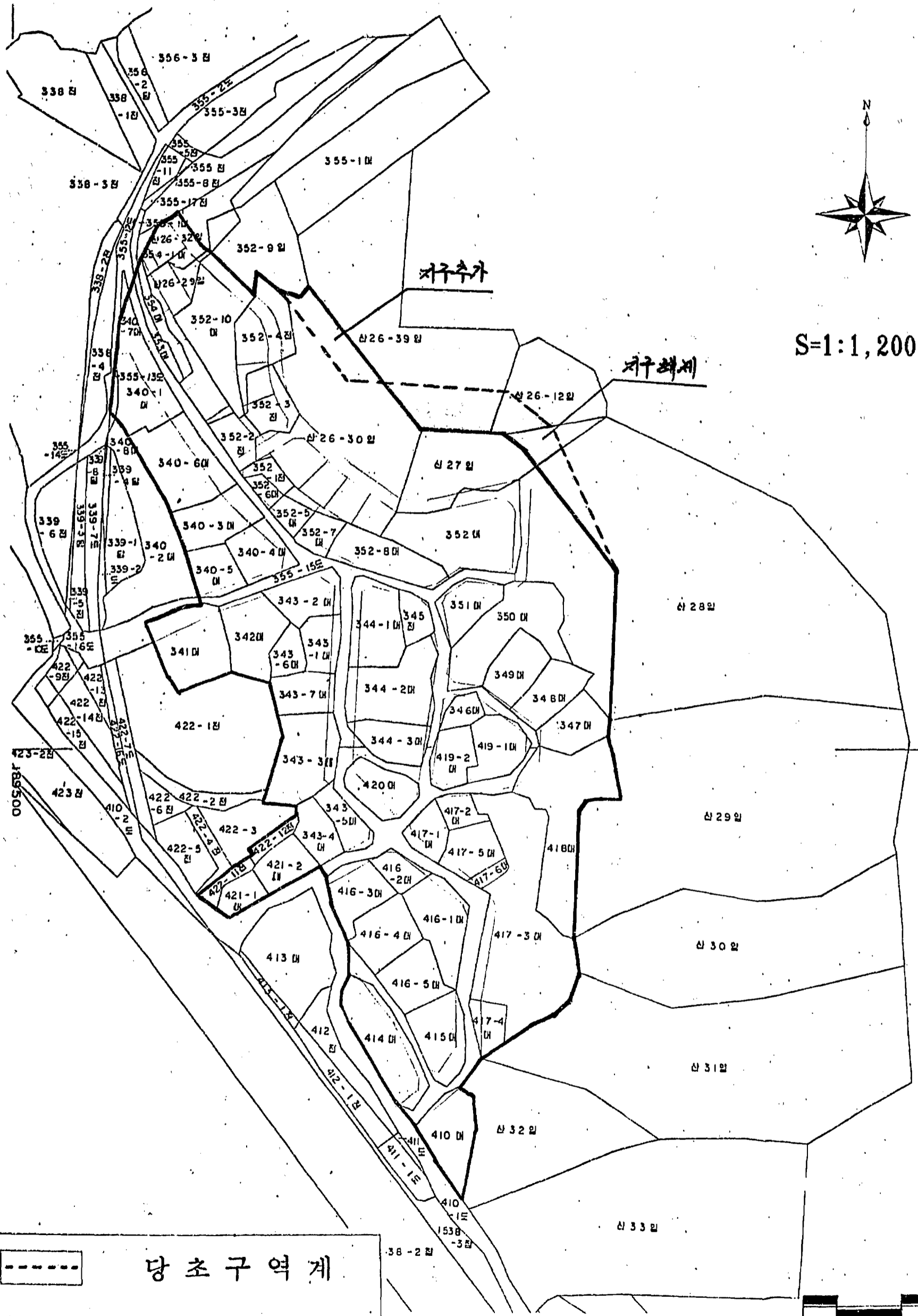
| 지구명  | 위 치             | 면 적 (㎡) |        |      | 비 고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| 변 경    | 증.감  |         |
| 상암 1 | 마포구 상암동 343번지일대 | 24,117  | 23,681 | 감436 | 지구계일부조정 |
| 구파발1 | 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일대 | 5,289   | 5,277  | 감12  | 단순면적정정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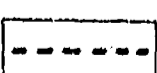

- 나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(마포구. 은평구) 도시정비국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.



# 上岩1地區 住居環境 改善事業

## 地區變更圖



|   |       |
|---|-------|
|  | 당초구역계 |
|  | 변경구역계 |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4- 호  
1994년 1월 일

006

결재  
1.25  
주장

1994  
주장

